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5-12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-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목적 제시
- “중증장애인생산품,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” 용어 정의
-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

나.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(안 제4조~제5조)

-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 규정
-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및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시설 등 규정

다. 우선구매의 이행계획 수립 및 촉진(안 제6조~제7조)

-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및 우선구매 비율 명시
-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 규정

라. 구매 협조요청, 표창(안 제8조~제9조)

- 관내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명시
- 기관, 단체, 개인 표창 제공 규정

3. 주요 토의과제

-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 3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5. 9. 4.~9. 24.(제출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5)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완료: 2025. 9. 29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영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2. “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”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(이하 “장애인생산품 등”이라 한다)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 및 직속기관, 하부행정기관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3.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
4. 구가 출자·출연한 기관

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 등)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
2.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3.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

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(이하 “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
2.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 부서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증장애인생산품: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

2.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: 법 제22조의3제2항 및 「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」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

제7조(우선구매 촉진)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구매 협조요청)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, 공공단체,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
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이수경 (☎ 3153-1682)